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090
----------	------

2021년 2월 25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년 12월 22일, 김기덕 의원
- 나. 회부일자: 2021년 1월 21일
- 다. 상정일자: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1년 2월 25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기덕 의원)

- 가. 제안이유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금리를 0%까지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어, 기금의 운용·관리를 수탁 받은 금융기관에 기금 용자에 대한 기존의 수취이자(연 0.9%)를 보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기금의 운용·관리를 수탁 받은 금융기관의 용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신설
(안 제5조제12호, 제6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금리를 0%까지 낮추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2021년도 기후변화기금 지출액은 771억 5천3백만원으로, 이 중 예치금이 72.8%(561억 4천7백만원)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비융자성 사업비가 18.3%(141억 1백만원), 융자성 사업비가 8.9%(69억원)를 차지하고 있음.

<2021년도 기후변화기금 지출계획>

(단위: 백만원)

항목	총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지출액	77,153	14,101	6,900	5	0	56,147
전년도지출액	103,755	27,955	6,837	5	30,000	38,957
증감	△26,602	△13,855	63	0	△30,000	17,190

- 융자성 사업에는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사업¹⁾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융자지원 사업²⁾ 및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³⁾ 등 3가지 사업이 있음.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의 경우,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융자지원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이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의 경우에도 별반 다를 바 없음.

1) 지원대상: 서울소재 에너지효율화 건물 및 주택, 지원규모: 60억원, 연리 0.9%, 8년 균등분할상환 등

2) 지원대상: 서울소재 200kW 이하 태양광발전시설, 지원규모: 3억원, 연리 0.9%, 8년 균등분할상환 등

3) 지원대상: 재활용사업자, 지원규모: 6억원, 연리 0.9%,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등

〈기후변화기금 융자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개소)

구분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자금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계획	실적	건수	계획	실적	건수	계획	실적	건수
2017년	15,000	11,770	827	1,000	1,000	14	1,000	300	1
2018년	15,000	10,350	829	1,600	232	6	800	400	4
2019년	10,000	1,500	92	800	246	5	800	700	4
2020년	6,300	1,300	61	250	240	3	600	280	2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실적이 저조한 기후변화기금의 융자성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0%까지 낮추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공감함.

이를 통해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 줌으로써 융자지원 사업의 실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금리 인하만으로는 큰 폭의 실적 증가를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소관부서에서는 사업 방향을 재편하거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집행률 제고 방안 모색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기금의 운영·관리를 수탁받은 금융기관의 용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제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5조제12호에 따라 이자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자는 기금의 운영·관리를 수탁받은 금융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금의용도) 기금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p> <p>1. ~ 11. (생략)</p> <p><u><신설></u></p> <p>12. (생략)</p> <p>제6조(용자 또는 보조 대상 및 절차 등) ① ~ ③ (생략)</p> <p><u><신설></u></p> <p>④ (생략)</p>	<p>제5조(기금의용도) ----- -----.</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u>기금의 운영·관리를 수탁받은 금융기관의 용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u></p> <p>13. (현행 제12호와 같음)</p> <p>제6조(용자 또는 보조 대상 및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제5조제12호에 따라 이차차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자는 기금의 운영·관리를 수탁받은 금융기관으로 한다.</u></p> <p>⑤ (현행 제4호와 같음)</p>